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가단51310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이진우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대구 동구 E 대 317㎡ 중 1/26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F가 2017. 12.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F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12. 28. 접수 제196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대구 동구 G 전 549㎡ 중 1/26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F가 2016. 6. 2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57,3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57,3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H이 F에 대하여 갖는 주식회사 I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한국산업은행 등을 거쳐 순차로 양수받은 후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1473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1. 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F는 주식회사 I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39,452원 및 그중 32,948,252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F는 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16. F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와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F의 모 J는 1995. 2. 3. 사망하였는데(이하 J를 ‘망인’이라 한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대구 동구 E 대 317㎡(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6/26지분과 대구 동구 G 전 549㎡(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6/26지분이 있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와 K, L, M, N, F가 있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6. 20. 제2부동산 중 6/26지분을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제1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7. 29. 위 지분에 관하여 1995.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또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12. 21. 제1부동산 중 6/26지분을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제2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2. 28. 위 지분에 관하여 1995.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2부동산의 처분 경과

1) 피고는 2016. 8. 29. 대한민국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제2부동산 중 6/26지분에 관하여 2016. 8. 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인 2021. 12. 31. 기준 제2부동산의 감정가액은 87,29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을 1995. 2.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하였다가, 2022.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 대상을 2017. 12. 21.자 제1상속재산분할협의 및 2016. 6. 20.자 제2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변경하였으므로,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5. 14. 무렵 제1, 2상속재산분할협이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또는 제2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2. 2. 25. 제1, 2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제1, 2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을

기준으로 1995. 2.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의 취소를 구하다가 소송 계속 중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신청서류가 제출되자 2022. 2. 25.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청구취지 변경을 전후하여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를 별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을 등기원인을 통해 알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에서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하므로, 당초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제1, 2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후 5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원고가 제1, 2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F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주식회사 H이 2014. 9. 1.경 주식회사 I에 25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F가 주식회사 I의 위 차용금채무를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연대보증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연대보증채권이 제1, 2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발생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F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F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원인 발생일인 1995. 2. 3.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란에 ‘1995.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F는 2016. 6. 20.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1.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기초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시행되던 등기예규 제438호(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 1982. 4. 13. 제정되어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실제 분할협의시기와 관계없이 등기원인일자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 2상속재산분할협의를 등기부에 기재된 1995. 2. 3.이 아닌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6. 6. 20. 및 2017. 12. 21.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이 그 이전에 성립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가 제1, 2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F는 제1, 2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제1, 2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2상속재산분할협의를 F의 법정상속분인 각 1/6지분의 범위에서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제1, 2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한 이상 F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방법

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제1부동산의 6/26지분 중 F의 상속지분(1/6)에 해당하는 1/26지분에 관한 제1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F에게 제1부동산 중 1/2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제2부동산의 6/26지분 중 F의 상속지분(1/6)에 해당하는 1/26지분에 관한 제2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6. 8. 29. 대한민국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제2부동산 중 6/26지분에 관하여 2016. 8. 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피고가 전득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제2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책임재산)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인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인 2021. 12. 31. 기준 제2부동산의 감정가액이 87,291,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에 따르면 제2부동산에 관한 F의 상속지분 가액은 3,357,346원($= 87,291,000\text{원} \times 6/26 \times 1/6$)이고, 이는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제2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57,3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357,3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